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02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이훈기 · 이정현 · 허종식  
이주희 · 황운하 · 김 윤  
박지원 · 정진욱 · 곽상언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보의 확산 속도 및 과급력을 고려할 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물의 게시·공유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규제대상인 인터넷의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게재뿐만 아니라 공유 행위까지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1호 본문).



법률 제 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본문 중 “인터넷에 게재하는”을 “인터넷(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게재·공유하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④ (생 략)</p> <p>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u>인터넷에 게재하는</u>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 4. (생 략)</p>	<p>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p> <p>1. ----- ----- ----- -----<u>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다)에 게재·공유하는</u>----- ----- ----- ----- ----- ----- -----.</p> <p>2. ~ 4. (현행과 같음)</p>